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계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 운영〉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1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9
1.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개요	9
2. 행정자료 협조기관	10
3. 재생에너지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27.
3. 회부연월일 : 2025. 6.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제1항1)에 따라 작성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 및 사용·보급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하여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하여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1)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
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의 수요·공급, 산업단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보급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유관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98조²⁾의 위임 규정에 따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³⁾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시설 용량이 3MW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 등의 인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전시설 용량이 3MW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인허가 이후의

2) 「전기사업법」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⑤ < 생략 >

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2. ~ 5. < 생략 >

② ~ ⑥ < 생략 >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 역시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발전사업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2021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허가 전체 단계를 관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⁴⁾을 추진 중이나,

현행 시스템 내 신재생에너지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공문 및 엑셀자료 등을 통해 통계 원자료를 취득·확보하는 작업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통계작성을 위한 통계 원자료 확보에 인력 및 시간이 과다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향후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발전사업 통합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허가 전체 단계를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통계시스템을 통하여 국가, 지자체, 유관 기관 상호 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의 공유가 가능해지게 되는데,

각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별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공유되는 경우, 해당 정보 공유로 인한 개인정보 및 경영상 비밀 침해 논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표현된 통계자료의 “공유”를 “제출”과 “공동 활용”으로 나누어,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이 행정자료를 통계시스템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원자료가 아닌 통계화된 행정자료에 대해서만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 시 데이터 신뢰성 및 보안 문제 발생 우려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현행	개정안	정부의견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② (생략) <신설>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하여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은 통계시스템을 통해 행정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계화된 자료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상호 간에는 원자료 수준의 행정자료의 “공동 활용”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행정자료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위임된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 수립,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사업자 지원·관리 등을 위해 다른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제출한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4항⁵⁾은 공공기관(국가 및 지자체 포함)으로 하여금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⁶⁾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운영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사 입법⁷⁾을 살펴보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막힘없이 흐르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지원 등을 위해 ‘데이터기행정활성화(정보화)’ 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2025년 예산 기준 150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음.

7) <비교 입법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보의 보유·이용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데이터의 신뢰성 및 보안 유지를 위해 통계화된 자료의 공동 활용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정안에 따른 통계시스템의 활용 및 시스템 내 정보의 보유·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

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 1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개요

□ 조사 개요

- **(작성근거)** 신재생에너지법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및 통계법 (승인번호 제337001호)에 근거하여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파악
- **(작성대상)** 신·재생에너지 정의에 따른 총 11개 에너지원에 대해 열과 전력에 대한 생산량, 발전량, 설비현황 조사

재생에너지(8개 분야)	신에너지(3개 분야)
태양(光, 熱),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수열, 바이오, (재생)폐기물	연료전지, IGCC, 수소에너지

- **(조사기간)** 전년도 실적을 조사(3~7월)하여 12월말 통계 공표

□ 조사 내용

-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행정자료 조사 및 일부 에너지원(바이오·폐기물·수소)은 위탁기관 통해 조사·작성

구분	집계기준	집계시점	조사내용(항목)	주요 출처
사업용	시장+PPA 설비	상업운전개시 기준	신·재생e 발전 실적 (용량, 발전량, 주소 등)	한전, KPX
자가용	보조금지원 설비	설치확인 기준	신·재생e 보조금 지원 설비 및 자체 설치 실적 (용량, 주소, 사용처 등)	지자체, 공공기관 등
	상계거래 설비	상계거래개시 기준	신재생e 상계등록 실적 (용량, 주소, 사용처 등)	한전

□ 조사 내용

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합 조사(공문발송 협조요청, 붙임1 참고)

-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교육청, 광역지자체,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전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협의회, 윤활유공업협회 등

②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별 내부 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

-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건물·융복합), 설치의무화, RPS제도 등

③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조사(서면조사·현장조사 병행)

- * 바이오·폐기물에너지 분야(18개 세부에너지원)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바이오·폐기물에너지 연료 및 수송용 수소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참고 2

행정자료 협조기관

□ 신·재생에너지원별 행정자료 협조기관

에너지원	세부분류	관련기관
태양열	-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태양광	사업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자가용	한전,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풍력	사업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풍력산업협회
	자가용	한전,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수력	사업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자가용	한전,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해양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지열	-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수열	-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바이오	바이오가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매립지가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바이오디젤	한국석유관리원
	우드칩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성형탄	한국무역협회
	임산연료	산림청
	목재펠릿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폐목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흑액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하수슬러지고형연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BIO-SRF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환경부, 환경공단
	바이오중유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폐기물	폐가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폐기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생활폐기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생활폐기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전국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협의회
	SRF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환경부, 환경공단
	정제연료유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윤활유공업협회
연료전지	사업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자가용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IGCC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 추진배경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3MW 이하)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정보도 지자체가 관리하여 통합적인 정보관리 부재
 -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도 지자체 ·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 발전사업관리 어려움

◇ 발전사업 추진 절차(3MW 이하)

발전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 → 공사계획신고 → 사용전검사 → 전력수급계약 → 사업개시신고 → RPS등록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지자체) (에너지공단)

- 발전사업자에게 사업절차, 법령개정 사항 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통해 일관된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

□ 목표

① 발전사업 관련 종합정보 제공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꼭 필요하나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

* 예비 사업자가 발전소 주소, 용량 등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일사량, 지목 등을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결과 등 맞춤 정보를 제공

② 발전사업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 체계적인 신재생 보급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원별 발전 현황 정보* 제공

* ①지역별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 관련 제반 사업추진현황, ②발전사업 허가 건수, 전력 계약용량 등 발전사업 현황 등 제공 예정

□ 진행현황

① 발전사업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19)

- 태양광 발전사업 예정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종합정보 제공 시작

* <http://recloud.energy.or.kr>에서 통하여 종합정보 확인 가능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9.5~9) 후 시스템 개발 착수(' 19.10~)

②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시범서비스(전북·경북) 개시(' 20)

- 발전사업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전북·경북 대상 시범서비스 개시(' 20.9)

③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시행(' 21)

- 발전사업허가 DB 구축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 태양광 발전사업 통합 정보관리 수행

④ 신재생 발전사업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24~)

- 지자체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허가 전체 단계를 관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고도화) 추진
- '25년 고도화 시스템 개발을 착수하여 '27년 구축 완료 예정
- * 발전사업 통합인허가 시스템 구축

< 발전사업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예시 화면 >

